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지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22

발의연월일: 2025. 1. 8.

발 의 자: 박지혜·차지호·박정현

이소영 • 박지원 • 위성곤

박해철 • 박희승 • 민형배

황명선 · 임미애 · 전진숙

정일영・김문수・김 윤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아니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이 매년 0.3%p 감소하여 2100년 국내총생산(GDP)이 21%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기후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임.

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 등 일정한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음. 또한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음.

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일부 사업이 아닌 국가 예산 사업 전체에 걸쳐 있는 만큼, 타당성 조 사 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. 이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제7항 및 제50조제6항 신설). 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.
- 제5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) 제3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타당성재조사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예비타당성조사) ① ~ ⑥	제38조(예비타당성조사) ① ~ ⑥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
	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
	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
	향을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
	<u>다.</u>
제50조(총사업비의 관리) ① ~	제50조(총사업비의 관리) ① ~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타당성재
	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
	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
	을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.